

4 (第76回－文化教育第1次)

<p>2.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10時 21分)</p> <p>○委員長 李詰鎬 議事日程 第2項 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을 上程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議事棒 3打)</p> <p>먼저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企劃管理室長 金鎮成 企劃管理室長 金鎮成입니다.</p> <p>서울Education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p> <p>먼저 制定事由는 서울Education財政의 計劃的이고 合理的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하여 教育監의 諮問機構로서 서울Education財政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테 있습니다.</p> <p>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監所屬下에 서울Education財政審議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을 規定하고,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하여 11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副教育監, 副委員長은 企劃管理室長으로 하도록 하며, 教育廳의 各 室·局長은 當然職 委員으로 하고, 기타 5名은 教育 또는 財政分野의 專門家中에서 教育監이 委嘱하도록 規定토록 하였습니다.</p> <p>따라서 委員會는 Education財政計劃樹立, 財政運營direction, 財源調達, 投資事業計劃樹立 等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도록 하며, 委員會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在籍委員 과반수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과반수의 賛成으로 議決하도록 規定하였습니다. 기타 委員會 運營에 관한 必要한 事項을 規定토록 하였습니다.</p> <p>여기에서 參考事項을 報告드리면, 地方財政法 第16條의 第2號 各 地方自治團體에는 地方財政會計審議委員會를 두도록 規定되어 있다는 것을 報告를 드립니다.</p> <p>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詰鎬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report가 있겠습니다.</p> <p>○專門委員 金長虎 지금으로부터 서울Education財政</p>	<p>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에 대하여 檢討report를 드리겠습니다.</p> <p>.....</p> <p>(報 告)</p> <p>1. 제정경위</p> <p>본 조례(안)은 1995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0일 소관별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2. 제정사유</p> <p>서울교육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자문기구로서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p> <p>3.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하여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 교육청의 각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위촉위원은 교육 또는 재정분야의 전문가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함 ○ 위원회는 교육재정계획수립, 재정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p>4. 근거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p>5.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본문 12조, 부칙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근거하여 서울교육재정의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	--

<p>도모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p> <p>○ 본 조례(안)의 각 조를 검토한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본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본 조례(안) 제5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사항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기 제정된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 위원회조례(조례 2913호, 1992.5.12)를 준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사료됨. <p>○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2가 1991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서울교육재정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p> <p>.....</p> <p>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 李詰鎬 그러면 本 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蘇中天委員 蘇中天委員입니다.</p> <p>지금 이 條例案에 보면 制定 理由가 서울 教育財政의 計劃의이고 合理的인 運營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1991年 12月 30日에 改正이 되어서 公布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條例案을 制定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理由하고, 審議委員會가 審議를 하고 어떤 豊算을 管理함에 있어서 豊算編成에도 反映이 되는 것인지, 그 議決이.</p> <p>또 두번째는 豊算 運用上에는 법적 근거만이 豊算編成을 하고 執行할 수 있는데 그 審議委員會에서도 확실한 役割이 무엇인지, 编成과 執行에도 어떤 諮問役割에서 教育監한 테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된다라고 그런</p>	<p>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 輿否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상입니다.</p> <p>○委員長 李詰鎬 一問一答式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 質問을 받고 할까요?</p> <p>○金寅東委員 一問一答은 너무 무성의하고요. 質問받고 하시죠.</p> <p>○委員長 李詰鎬 네, 그렇게 하세요.</p> <p>○金寅東委員 때늦은 감은 있지만 서울 教育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의 制定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教育財政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制度의改善를 누차 要求했던 바가 있었고 한데 다만, 여기에서 지금 同僚 우리 蘇中天委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p> <p>지금 주된 審議事項이 財政計劃 樹立하고 運營方向하고 財源調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投資事業은 어떻게 할 것이나 하는 이런 事項을 樹立하는데 지금 이 條例案이 보면 전문 몇 條입니까? 12條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미비한 것은 여기에 委員會를 構成함에 있어서 委嘱委員은 어떻습니까? 教育委員들의當然 參與制度같은 것은 장치가 안되는 것인지, 물론 財政 分野의 專門家 中에서 教育監이 委嘱한다 했는데, 물론 審議process에서 委員들이 審議를 하겠습니다만 최초에 그런 計劃을 樹立하고 할 때부터도 委嘱委員 中에는 教育委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또 여기서 좀 그래요. 이 條例를 通過해서 지금 서울市 教育廳의 財政은 依存體制의 豊算으로 運營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市와의 關係는 어떻게 設定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具體的으로 조금은 條例에 構成上 그런 것이 明文化 안 되어 있는 테, 그러면 이런 條文에 따라서 각 市·道에 이런 條例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内容과 上충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동일한 内容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어느 道가 제일 처음 91年에 이렇게 制定이 된 이후에 條例 設置할 수 있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市가 91年이면 현재</p>
--	---